

입시홍보위원회규정

제정 : 2022.05.01

개정 : 2022.10.01

개정 : 2023.10.16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입시홍보와 관련 대내·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우수 신입생을 유치하고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대학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교무처장, 미래전략처장, 입학학생취업처장, 사무처장을 보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.10.01., 2023.10.16.>

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입학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항과 같다.

- ①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
- ② 입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
- ③ 입시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
- ④ 기타 입시홍보에 관한 사항

제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 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5조(간사)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